

상지대학교 외국인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안)

제정 2025.03.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입학 주관 부서)에 근거하여 외국인 특별전형(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신·편입학 전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대외협력부총장(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제교류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대학원장,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국제교류처장, 입학처장, 행정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외국인 특별전형(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신·편입학 전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 특별전형 신·편입학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특별전형 신·편입학 전형제도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특별전형 신·편입학 선발 및 전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사정
5. 기타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 등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내용에 대한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업무 관계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국제교류팀-306, 2025.03.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